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청구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6년10월27일**

**국 무 총 리 한 명 속**

**국 무 위 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법률 제8057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법」 제5편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절차의 수행) ①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전자문서의 접수)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이용되는 절차에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전자서명) ①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

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제8조(전자적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인지액 등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

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따라 독촉절차에서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 및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법 제2조제2호·제3조 및 제4조)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함.

나. 전자문서의 접수(법 제5조)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접수시기로 보도록 하고, 법원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사실을 즉시 고지하도록 함.

다. 전자문서의 송달(법 제8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사실을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

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10월27일

국무총리 **한 명 속**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 성 호**

● **법률 제8058호**

**法官懲戒法 일부개정법률**

法官懲戒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法官懲戒法”을 “법관징계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4人”을 “3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위원은 법관 3인과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 중에서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②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중 “2年”을 “3년”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①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②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를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징계청구의 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던 것을,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